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13호 2002. 3. 8)

총무위원회
2002. 3. 15(금)

1. 심사경과

- 가. 2002. 3. 8 사천시장 제출
- 나. 2001. 3. 9 총무위원회 회부
- 다. 2001. 3. 13 사천시의회 제6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총무과장 김영고)

가.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복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재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90명에서 8명 증원하여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774명 → 782명(+8명)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명돈)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시행으로 인한 복지업무 증가와 복지서비스 요구 다양화로 인한 인력증원의 필요 등으로 정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 지침에 의해서 사천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790명에서 798명, 집행기관의 정원이 774명에서 782명으로 8명 증원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고,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